

## 15.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용자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택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주택사업등록업자(이하 “차주”라 한다)에게 용자한 용자금에 대하여 회사가 이를 회수할 때까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자방법 및 기간) ①용자의 형식은 증서대출로 하며, 당초 조합이 용자한 용자금의 상환기일(이하 “상환기일”이라 한다) 이내에 금전소비대차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갱신토록 한다.

②제1항의 약정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징구한다.

1. 차용금신청서 및 금전소비대차약정서(별지서식 제1호)
2. 영수증(별지서식 제2호)
3. 차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이사회차입결의서 및 감사승인서(별지서식 제3호)
4. 차주가 개인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제3호 내지 제4호의 서류는 발행일로

부터 3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③용자기간은 1999년도의 상환기일로부터 15년간으로 한다.

제3조(용자금이자율 및 이자수납방법) ①용자금이자율(지연배상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율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신용조사및평가규정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이라 한다)별로 별표1과 같다.

②제1항의 용자금이자율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갱신여부에 불구하고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③이자는 용자금에 용자금이자율과 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산출된 이자의 10원 미만은 이를 버린다.

④이자는 차주가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이하 “약정납입일”이라 한다)에 매월 후취한다. 이 경우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약정을 갱신하지 아니한 차주에 대하여

는 상환기일에 해당하는 응당일을 약정 납입일로 본다.

⑤용자금의 이자계산시 용자일은 이자계산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상환일은 포함한다.

제4조(지연배상금)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용자금 전액에 대하여 상환기일(또는 약정납입일) 다음날로부터 실제상환일(또는 실제납입일)까지의 해당일수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받는다.

1. 상환기일(상환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에 용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2. 약정납입일(약정납입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영업일을 말한다)에 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제5조(용자금의 회수) ①용자금은 1999년도의 상환기일로부터 3년간 거치후 12년간 균등분할하여 회수한다. 이 경우 당해 연도 회수분을 초과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는 초과회수액 만큼 잔여 연도 회수분 산정시 감액할 수 있다.

②분할상환금은 매년도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여야 한다.

③용자금의 일부를 회수하였을 때에는 일부회수명세표(별지서식 제4호)를 약정서에 첨부하고 그 회수일자와 회수금액을 기입하여 책임자가 검인한다.

제6조(변제의 총당) 변제금은 가지급된 제반비용, 이자(지연배상금을 포함한다), 용자금의 순서로 총당한다.

제7조(상환독촉) 용자금 상환이 2월 이상 지연되거나 또는 이자납입이 3월 이상 지연된 때에는 10영업일 이내에 용자금(이자)상환독촉및담보권실행예고통지서(별지서식 제5호)를 차주에게 발송한다.

제8조(담보권실행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관리규정의 보증사고관리절차를 준용한다.

1. 용자금상환이 3월 이상 지연된 경우
2. 이자납입이 4월 이상 지연된 경우

제9조(용자상환에 대한 예외) 차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용자이율, 상환기일, 회수방법 및 채무불이행시의 조치 등에 대하여 차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인가 결정 또는 약정에서 정한 바를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화의의 인가를 득한 경우
2. 회사정리계획의 인가를 득한 경우
3. 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금융기관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WORKOUT)약정을 체결한 경우

제10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9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사규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  
과 동시에 용자업무규정, 용자업무취급세  
칙 및 용자업무사후관리세칙은 폐지한다.

[별표 1](제3조 관련)

용 자 이 율

신용평가등급	대출보증미이용업체	대출보증이용업체	지연배상금율
A+, A, B+, B	연5.0%	연6.0%	연14.0%
C+, C	연5.2%	연6.2%	
D+, D	연5.3%	연6.3%	
E	연6.0%	연7.0%	

- 비고 : 1. 회사가 대출보증의 구상채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도 대출보증이용업체에 포함하  
며, 대출보증이용여부는 보증이 실제로 소멸된 날을 기준으로 함  
2. 신용평가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 익일부터 변경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용자이율을 적용한다.

주택회보